

『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2일

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3년 10월 10일

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해권

나. 제안이유

-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에 따른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며
-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기 위함.
-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임대사업장 분소의 설치 근거 신설(안 제2조)
- 임대사업의 위탁 및 위탁시 경비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)
- 등록 장애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(안 제11조)
-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.(2013. 8.19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'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은,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업경영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그 주요내용으로는,
 - 임대사업장 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
 - 임대사업의 위탁 및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근거 명시.
 - 등록 장애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(1/2)하고,
 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.
(위원회 구성은 위원장(농업기술센터소장)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)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등, 농민들의 농업경영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서,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